

'26년 「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」 관련 수산물 직매장 창업희망자 지원 모집 공고 (접수기간연장)

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『'26년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』 관련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할 창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□ 공모개요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(기존) '26. 4. 6. ~ 4. 24. 18:00 (19일간)
(변경) '26. 4. 6. ~ 5. 10. 18:00 (35일간)
- 모집대상 : 수산물 직매장(Sh어부세상)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
- 모집인원 : 30명
- 지원내용 : 창업교육 지원 및 수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
- 모집지역(가맹점 개설 지역) :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도 원주, 춘천
- 지원자격 :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*
*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 (만 19세 이상 34세 이하)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
- 총사업비 : 2,700백만원(국고보조 50%, 수협유통 50%)
 - 창업교육 지원 300백만원(1인당 5백만원 한도)
 - 수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(개소당 최대 8,000만원) 2,400백만원(30개점)

□ 창업자 지원내용

- (점포개설 지원) 점포당 8천만원* 한도(1인, 1점포, 1회 한)
 - * 국고보조 4천만원, 수협유통 4천만원 각각 지원
 - 8천만원 초과시 창업자 본인 부담
 - 쇼케이스, 냉동창고, 수족관, 전산장비, 인테리어 및 간판 등
- (창업교육 지원) 1인당 500만원(1회 한)
 - 교육기간 : 30일(이론 3일, 실습 15일, 현장 12일)
 - 교육장소 : 이론 및 실습(서울 소재 교육장), 현장(현 운영매장 등)
 - 교육내용
 - 이론교육 : 발주·회계·세무 및 재고관리, 가맹사업 관련 규정 등
(가맹점주 역할·책임, 세무, 노무 등)
 - 실습교육 : 수산물 손질(선어, 활어 등) 및 상품화 방법(회, 초밥 등)
 - 현장교육 : 고객응대, 판매기법, 점포관리 등
(교육에 필요한 장비(의류 등) 일체 지급)

□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

- 지원자격 :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*

*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 (만 19세 이상 34세 이하)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

-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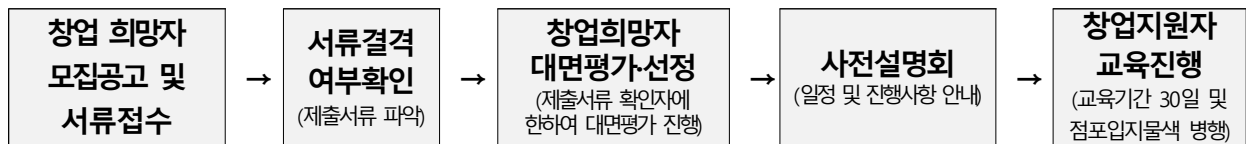
- ① 응모신청서
-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- ④ 주민등록등본 (발급본)
- ⑤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(발급본) *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(www.credit4u.or.kr)
- ⑥ (필요시)수산물 판매경력 증명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)
- ⑦ (필요시)가맹사업 운영경험 증명서류(사업자등록증, 가맹계약서, 폐업신고서)
- ⑧ (필요시)자격증 가점 증명서류(수산물품질관리사, 수산물가공기능사, 위생사, 조리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)

*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
* 응모신청서, 이력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본인 자필 서명 기재

- 제출된 서류는 수정·변경할 수 없으며, 기재사항의 누락·오류 등의 경우 사전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서류 제출방법 : e나라도움(보조금 시스템) 및 수협유통 이메일 (nffcfcl@suhyup.co.kr) 제출

□ 창업지원자 선정



- (기존) 서류접수 신청자 대상으로 서류결격여부 확인 후 창업자 대면평가 (자금조달능력, 경력보유, 사업의지) 기회 부여 및 평가를 통한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자순으로 선정
 - (변경) 서류접수 신청자 대상으로 서류결격여부 확인 후 (계량)평가영역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(가점포함 최대 60점) 최대 45명 선발 후 창업자 대면평가(자금조달능력, 경력보유, 사업의지) 기회 부여 및 평가를 통한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자순으로 선정
- ※ 붙임4) 교육지원 대상자 기준심사표 1부.

- 창업자 대면평가 종료 후 '사전설명회' 진행을 통한 일정 및 진행사항 안내
- 창업지원 대상자 발표는 e나라도움(보조금 시스템),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, 선정자에게 개별통지 예정

□ 창업지원자 평가

○ 선정방법

(기존) 서류접수 신청자 중 서면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민·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

(변경) 서류접수 신청자 중 45명 선발 후 민·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

○ 선정기준 : 최고점·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
지원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30명 까지 선정

○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○ 창업희망자 대면평가 일정

(기존) '26. 4. 29(수) ~ 4. 30(목) (2일간)

(변경) '26. 5. 15(금) (1일간)

※ 자세한 일정은 별도 통보, 대면평가 종료 후 사전설명회 진행 예정

○ 창업지원 대상자 발표

(기존) '26. 5. 6(수) /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

(변경) '26. 5. 18(월) /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

○ 창업지원 대상자 교육 진행

(기존) '26. 5. 11(월) ~ '26. 6. 20(토) (30일간)

(변경) '26. 5. 20(수) ~ '26. 6. 30(화) (30일간)

□ 창업지원 대상자 점포유형 선택

○ 최종 선정된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점포면적 및 판매형태에 따른 2가지 유형의 점포 중 한가지 점포 유형 최종 선택 권한 부여

점포유형	판매형태	비 고
A타입 (20평내외)	제철수산물, 냉동, 활어회, 초밥, 밀키트, 건어물	내식불가
B타입 (30평내외)	제철수산물, 냉동, 활어회, 초밥, 밀키트, 건어물, 요리식품	내식가능

○ 시범사업장

- A타입 :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개롱역 3번 출구 앞 『어부세상』
- B타입 :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14-5 『어부세상』

□ 창업지원 대상자 의무사항

- 점포 운영 기간 5년 이상(국고 보조금 지원 시설 감가상각 완료 기간)
- 점포 운영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비례하여 국고보조금 및 수협유통 지원금 반납(계약체결시 보증보험 징구)

□ 유의사항

- 사업장 시설구축비용 (8천만원) 지원금액 한도 이상의 비용은 본인부담
(예) 8천만원초과 시설구축비용, 임차보증금, 권리금, 보증보험료, 기타 초도비용 등)
- 창업자 대면평가 면접 진행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지참
(신청자 본인 여부 및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)
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) 원본
 - ※ 상기 서류 미지참 또는 확인 불가 시 창업자 대면평가 참여 불가
- 창업자 대면평가 이후 수협유통 사전설명회에 필히 참석
 - ※ 미참석시 향후 지원 불가
- 문의처 : (주)수협유통 사업개설팀(☎02-405-8314~5)

2026. 4. 20

(주)수협유통 대표이사

- 붙임 : 1. 응모신청서 각 1부
2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각 1부. 끝.

응 모 신 청 서

점주 이력 (필수기재)	성 명			
	주 소			
	생년월일		성 별	
	휴 대 폰		이 메 일	
기초 정보 (필수기재)	프랜차이즈경력	(작성예시) 00년 00월 / 업종명(브랜드명) / 증빙서류 별첨(사업자등록증, 폐업증명서 등)		
	자영업경력	(작성예시) 00년 00월 / 업종명(브랜드명) / 증빙서류 별첨(사업자등록증, 폐업증명서 등)		
	희망 지역	(작성예시) 000시 000구 000		
	희망 타입	<input type="checkbox"/> A타입(20평내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B타입(30평내외)		
	희망 상권	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역세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: _____		
	희망 면적	<input type="checkbox"/> 15~20평 <input type="checkbox"/> 20~30평 <input type="checkbox"/> 30평 이상		
	창업가능자금	총액: _____ 만원 (자기자본: _____ / 타자본: _____) <small>(작성참고) 실제 실행 가능한 금액으로 창업가능자금 작성</small>		
	운영 주체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공동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 (관계: _____)		
	현재직업			
<p>수협유통에서 모집하는 「2026년 수산물 직매장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」 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또한, 사업운영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</p> <p>* 단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</p> <p>* 기초정보 필수 기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성명 : (인)(또는 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주)수협유통 대표이사 귀하</p>				

이 력 서

■ 기본 사항

(사 진)	성 명					
	생년월일	년 월 일				
	현 주 소					
	연 락 처			E-Mail		
취업보호대상 등록 유무	유(), 무()		장애인 등록 유무	유(), 무()		
병역사항	군필(), 미필(), 면제()		최종학력	(전공 :)		

■ 자격 사항

자격증	등급	발급기관	발급일자

■ 경력 사항

근 무 처	재직 기간	근무 부서	담당 업무	직위	비고
	20 . . ~ 20 . .				
	~				
	~				
	~				
	~				

상기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,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 되어 지원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작성일자 : 2026 년 월 일
 지원자 : (인)

자기 소개서

○ 창업동기 및 사업목표 (800자 이내)

(작성예시)

- 본 사업(수산물 직매장)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개인적 동기를 작성하시오.
- 일반 소매업이 아닌 수산물 직매장을 선택한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하시오.
- 사업 개시 후 1~3년 내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, 고객, 점포 운영 계획 등 정량적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하시오.

○ 본인의 경험 및 강점 (800자 이내)

(작성예시)

- 수산물 판매, 유통, 보관, 위생관리 또는 관련 업종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성과를 작성하시오.
-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, 본 사업 수행에 활용 가능한 유사 경험(소매업, 고객응대, 재고관리 등)을 제시하시오.
- 특히 수산물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신선도 관리, 고객 신뢰 확보, 위생관리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시오.

○ 수산물 직매장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실행 계획 (800자 이내)

(작성예시)

- 수산물 직매장의 특성(신선도 유지, 유통구조, 계절성, 폐기관리 등)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시오.
- 상품 구성(어종 선택), 공급 방식, 가격 전략, 차별화 전략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하시오.
- 위생관리, 재고관리, 폐기물 관리 등 수산물 특화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.

붙임4

창업교육지원 선정자 기준 심사표

- 사 업 명 :
- 대상자명 :
- 평가위원 : (인)

평가영역	평가지표	세부 평가 내용	배점	평가 점수
기본대상 요건평가	서류 결격여부	- 응모신청서, 이력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, 프랜차이즈 경력, 자영업경력 확인가능 서류 제출 여부 ※ 해당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여부 판단	결격있음 / 없음	
자금조달 능력평가 (30)	창업자 본인부담금 확보능력 (25)	- 총 자본액 (자기자본, 타자본) 가능 여부 평가 (1억5천만원이상 : 25점 / 1억원이상~1억5천만원미만 : 20점 / 5천만원이상 ~ 1억원미만 : 15점 / 3천만원이상 ~ 5천만원 미만 : 10점 / 3천만원 미만 : 0점)	25	
	신용정보 평가 (5)	- 제출된 "신용정보조회서"상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 미등록자 (3항목 모두 해당시 배점 부여) → 채무보증정보 없음 → 신용도판단정보 없음(90일이상 연체 등) → 공공정보등록 없음(파산, 회생, 체납)	5	
경력보유 (20)	수산물 판매경력 (10)	- 관련 업종 근무경력 (無경력 : 0점 / 1년 이상 ~ 2년 미만 : 2점 / 2년 이상 ~ 3년 미만 : 3점 / 3년 이상 ~ 5년 미만 : 5점 / 5년 이상 : 10점) ※ 중복 경력시 합산가능, 단, 총점 10점 초과 불가	10	
	가맹사업 운영경력 (10)	-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운영 경험 (無경력 : 0점 / 1년 이상 ~ 2년 미만 : 2점 / 2년 이상 ~ 3년 미만 : 3점 / 3년 이상 ~ 5년 미만 : 5점 / 5년 이상 : 10점) ※ 중복 경력시 합산가능, 단, 총점 10점 초과 불가	10	
사업의지 (50)	사업의지 및 역량 (25)	- 동기, 의지, 경험, 고객지향성 등 (우수 : 20 ~ 25점 / 보통 14 ~ 19점 / 미흡 13점 이하)	25	
	사업이해도 및 실행계획 (25)	- 사업 이해, 전략, 운영계획 등 (우수 : 20 ~ 25점 / 보통 14 ~ 19점 / 미흡 13점 이하)	25	
가점 (최대 +10)	자격증 가점 (5)	- 수산물, 식품위생, 요식업 관련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보유시 가점 부여 → 수산물품질관리사, 수산물가공기능사, 위생사, 조리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* 위 명시된 자격증에 대해서만 한함	+5	
	청년가점 (5)	- 신청자 중 청년 (19세이상 ~ 34세이하) 대상자 ※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(만 19세 ~ 34세)	+5	
합계			100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(이하 ‘해양수산부’라 한다)의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‘수산물 직매장’(이하 ‘직매장’이라 한다)이란 해양수산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·설비를 구축한 ‘수산물 상설 판매장’을 말한다.
- ② ‘총괄기관’(이하 ‘해양수산부’라 한다)이란 ‘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’ 사업계획 수립, 조정, 승인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③ ‘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’(이하 ‘수협중앙회’라 한다)란 ‘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’ 지원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④ ‘창업지원 플랫폼 운영기관’(이하 ‘운영기관’이라 한다)이란 해수부 지원사업을 위임받아 직매장 (예비)창업자 모집·선정, 점포 입지선정, 시설·설비 구축, 창업 교육, 수산물 공급 등 직접적으로 창업지원사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⑤ ‘창업지원사업자’(이하 ‘창업자’라 한다)란 직매장 창업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직매장을 창업한 사업자를 말하며, 지원자격 등 세부조건은 공고문에 따른다.
- ⑥ ‘직거래 수산물’이란 어업인 및 수협, 어업회사법인,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(또는 생산·가공된 수산물)으로 운영기관이 구매하여 직매장에 공급·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직매장 관리업무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보조금법’이라 한다) 및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기본규정’이라 한다)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. 단, 본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한 더 강화된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장 사업추진체계



제3장 직매장 (예비)창업자 모집 · 선정

제4조(모집공고) ① 운영기관은 직매장 (예비)창업자 모집을 위해 운영기관 또는 관계 기관 홈페이지, 타 창업지원 관련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(예비)창업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사업개요
2. 신청자격
3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4. 운영기관, 창업자의 의무 및 역할
5. 신청절차, 방법 및 신청기간
6.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
7.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운영기관은 창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을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게재해야 하며, 필요 시 공모 접수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창업자 선정) ① 운영기관은 (예비)창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총괄기관 소속 공무원, 관련기관·단체 직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운영기관은 (예비)창업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고,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(예비)창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 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4장 직매장 시설 및 운영기준

제6조(직매장 설치) ① 직매장은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수산물 판매면적을 총 매장 면적의 50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직매장 점포 입지선정은 운영기관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창업자 신청 매장의 입지조건 및 상권분석 현장 확인 후 창업자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에 정할 수 있다. 단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직매장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직매장 설치 유형은 점포입지에 따라 주요고객층 및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판매형태 및 취급 수산물을 점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(예비)창업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이수한자에 한하여 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산물 공급) ① 운영기관은 신선한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통한 판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업인 및 수협, 어업회사법인,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직매장에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기관은 직매장에 제2조 제6항의 직거래 수산물을 50% 이상 공급하여야 하며, 수산물 이력제 등록, 방사능 검사 시행, HACCP 인증(수산가공품에 한함) 등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(수산물 수급 불가, 소비자 요구, 계절성 수산물 등)가 있을 경우에는 직매장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.

③ 운영기관은 수산물 과잉생산 또는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한 경우 해양수산부나 수협중앙회 소비촉진 방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직매장 관리) ① 운영기관은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수발주, 판매현황 및 재고현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직매장은 동 지원사업의 정부 정책목적 달성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후관리기

간 동안 운영기관과의 수산물 공급계약을 유지하며,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운영기관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관리, 원산지관리, 선도관리 등 직매장의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,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(수수료) 운영기관은 직매장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수수료율은 직매장과 운영기관이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정산) 직매장은 운영기관의 수산물 공급대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산하여야 한다.

제11조(품질안전관리) ① 운영기관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등 관련법에 따라 취급 수산물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의 점검사항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유통기한 표시 및 확인
2. 식품 허위·과대광고
3. 냉동·냉장식품 온도관리
4.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취급 준수
5.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확인
6.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
7. 즉석제조식품, 가공식품 등의 품질관리
8. 제조·가공업체 현지 점검 등

② 운영기관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이 시행한 수산물 품질검사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급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장 시설물 관리

제12조(사후관리 등) ① 직매장의 사후관리기간은 중요재산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한다.

② 창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 후 15일 이내에 '별표'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고, 사후관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운영기관은 창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산처분의 제한) ① 창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·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다하여 관리·운영하고, 해당 시설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창업자는 직매장 시설·설비와 기계·장비 등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(목적 외 사용, 양도·교환·대여, 담보 제공)하거나 시설물의 이전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거쳐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창업자는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장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수협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운영지도 및 점검

제14조(지도·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) ① 해양수산부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직매장의 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,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창업자는 운영기관과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의 운영지도 및 점검, 사업실적 조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경영부실사업자의 관리 등) ① 해양수산부는 제14조에 의한 지도·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·장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2.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
3. 부도, 폐·휴업, 사업 포기, 사업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

아니하여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② 창업자가 제12조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을 중단하거나, 제11조 제1항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 창업자의 운영부실로 정책 목적 실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질병, 사망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한다.

제16조(보조금 신청·사용) ①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, 「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운영기관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써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사업추진 유의사항) ① 창업자가 사업기간 중도 사업 포기 시 보조금 기집행금액 전액 회수(이자포함) 및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운영기관은 세부사업계획(예산, 사업내용 등) 변경 시 수협중앙회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사전승인을 득한다.

③ 창업자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회의,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, 운영기관 또는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수시 운영실적 조사(매출 등)와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,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.

※ 별표 : 국고지원 시설·장비의 중요재산 현황(양식) 1부.

[별표] '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' 별지 제12호 서식

국고지원 시설·장비의 중요재산 현황

중앙관서명					
세부사업명					
재 산 명					
유 형					
목적(용도)					
주소	시·도 구분				
	상세주소				
면적(m ²)					
내역	수량				
	단위				
취득가액(원)		계	국고보조금	지자체부담금	자기부담금
현재가액(원)					
보조금유형					
취득일자					
처분제한기간(일자)					
소유자구분					

참고

어부세상 개롱역점, 파주운정점

어부세상 개롱역점



어부세상 파주운정점



※ 어부세상 개롱역점 : 25.07.18(금) 오픈 / 파주운정점 : 25.07.22(화) 오픈